

인천지방법원 2021. 9. 1 선고 2021가단203189 판결 [사해행위 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호

변 론 종 결 2021. 8. 11.

판 결 선 고 2021. 9. 1.

주 문

1. 별지 목록에 나오는 각 부동산 중 각 2/9지분에 관하여, ① D과 피고 등이 2020. 6. 25.경 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함과 아울러, ② 피고는 D에게 이 법원 강화등기소 2020. 8. 28. 접수 제265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갑 1~8의 각 일부 기재와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·국토교통부 장관·E 주식회사 등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, ① 원고가 2016. 10. 20. D을 상대로 양수금 21,601,468원과 그중 원금 300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, 2016. 11. 7. 지급명령(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406105 사건)을 얻었고, 그 지급명령은 2017. 2. 7.경 그대로 확정된 사실, ② 그 후 원고가 2017년~2020년 위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D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그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자, 2020. 5. 중순경에 이르러 D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을 한 다음, 2020. 6. 28. D에게 심문서가 송달된 사실, ③ 원래 별지 목록에 나오는 각 부동산(이하 편의상 통틀어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고 한다)은 오래 전부터 D과 피고 등의 선친(先親)인 F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, F이 2020. 6. 하순경 사망한 직후 피고와 D 등은 2020. 6. 25.경 상속재산 분할협의(이하 편의상 ‘이 사건 약정’이라고 한다)를 한 다음, 2020. 8. 28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일괄적으로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.

2.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

가.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정은 D의 채권자인 원고 등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, 그 사해행위의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정당하다.

나.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맺을 당시 이른바 ‘선의의 수익자’였다고 다투지만,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/9지분에 관하여, ① D과 피고 등이 맺은 이 사건 약정을 취소함과 아울러, ②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2020. 8. 28. 마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, 그 의무의 이행 등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.

판사 박관근

